



교원의 교육활동과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온라인 원격수업에 따른 교육활동 보호 협조 안내

학부모님, 안녕하십니까?

코로나19 감염증 지속으로 인해 국가적으로 온라인 개학이 이루어짐에 따라 우리 학교는 학생들에게 질 높은 원격수업 프로그램 제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.

교원에 대한 존중과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예방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학부모님과 학생들은 다음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해주시고, 부당한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.

□ 온라인 원격수업 시 발생 가능한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시

- 교사의 강의 내용 등에 대하여 단톡방 또는 SNS 소통방에서 험담하는 행위
- 온라인 강의방에서 교사에 대한 욕설 행위
- 출석 확인 및 피드백 과정에서 교사에 대한 모욕 및 명예훼손 행위
- 수업 영상을 위·변조하여 모욕 또는 성희롱하는 행위
- 교사의 강의 활동을 녹음 또는 녹화하여 다수에게 유포 또는 비방하는 행위
- 그 밖의 교원지위법에서 정하는 교육 활동 침해 행위

□ 교원의 교육 활동보호를 위한 학부모님 협조 사항

- 교사에 대한 **비방이나 욕설, 폭언 등의 명예훼손 또는 모욕 행위는 금지**됩니다.
- 교사의 수업 및 평가 내용에 대해 **부당한 요구나 간섭은 불가**합니다.
- 수업 관련 문의 및 자녀 교육 상담은 **학교교육활동 시간 내(09:00-17:00)**에 가능합니다.
- **수업 동영상을 무단으로 캡처하거나 영상을 유출하는 행위는 교사의 소중한 초상권 및 저작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, 반드시 수업 목적으로만 사용**하시기 바랍니다.

[교육활동 침해행위 조치 관련 근거]

- 「교원지위법」에 따라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 침해학생 및 보호자 등 조치
- (침해학생 조치) 학교에서의 봉사, 사회봉사,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, 출석정지, 학급교체, 전학, 퇴학처분(「교원지위법」 제18조 제1항)
- (피해교원 보호조치) 심리상담 및 조언,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, 그 밖에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(「교원지위법」 제15조 제2항)

2020. 4. 22.

미원초등학교장